

협회기사

이사회

제22회 이사회

일시 : 1972 . 10 . 19 (목) 16 : 00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희, 송관식,
안영배, 김영

참석 : 서울시지부장 이규복

부의안건

1. 성명서 발표

(10.17 박대통령 특별선언을 적극지지 일간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의.)

2. 표창장 수여의 건

(1년에 2명만 수여키로 하고 금년도에는 경
남 및 경기 지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키로 결
의)

3.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건설부에서 이첩된 건축행정서식을 각시도
지부에 인쇄 배부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것
을 결의)

제23회 이사회

일시 : 1972 . 10 . 26 (목) 11 : 00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희, 송관식, 김영

참석 : 감사 김원안, 윤희준, 서울시지부장 이규복

보고사항

1. 건설부 정기감사 수검

(10.16~18까지 3일간 수검)

2. 3단체 회장 회의 개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호 의견을 교환을 위해
회장, 김정수, 한정섭, 안영배 등 회합)

3. 본협회 자체 감사 수검

(10.18~23까지 6일간 수검)

4. 본협회 제7주년 창립기념행사 실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10.23 10:00시에 회장
이하 전 임직원과 서울시지부 임직원이 참석
한 가운데 제7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가짐.)

5. 건설부 주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10.25, 오후 2시부터 건설부 회의실에서 공
청회를 개최하였는바 본협회에서는 회장 강
대웅, 이사 안영배, 서울시지부장 이규복 등
참석)

부의안건

1. 총회 회순 결정

(제7회 정기총회의 회순을 결의)

제24회 이사회

일시 : 1972 . 11 . 6 (월) 15 : 00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희, 송관식, 김지태
안영배, 오웅석

참석 : 감사 김원안, 서울시지부장 이규복

보고사항

1. 제7회 정기총회 개최 완료

(10.28.10:00 건설회관대강당 에서 개최,
17:40 폐회)

2. 제11회 잡지협회 총회 개최

(11.1.10:00 신문회관 강당에서 제11회
총회를 개최, 회장을 대리 사무처장 배원식
참석)

3. 회원증 제작

(해당 지부에 154개 회원증을 제작하여 발송)

4. 임원 당선통지

(제7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에게
당선 통지)

5. 각시도 지부총회 개최일자 확정

①서울지부—11.18

②부산지부—11.15

③충남지부—11.14

④전북지부—11.15

⑤전남지부—11.16

⑥경북지부—11.16

⑦경남지부—11.14

⑧제주지부—11.18

(이의 지부는 현재 일자 미정)

부의안건

1. 임원담당부서 결정

- ①총무이사겸—구유회
사업담당이사
- ②총무담당이사—김지태
- ③기획담당이사—송관식
- ④지도담당이사—오웅석
- ⑤출판담당이사—안영배

2. 각위원회 위원장 결정

- ①업무연구위원회 위원장—구유회
- ②지도위원회 위원장—오웅석
- ③기획위원회 위원장—송관식
- ④편찬위원회 위원장—안영배
- ⑤윤리위원회 부위원장—김지태
(임기만료되는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원
장에게 위임키로 함)

3. FY72. 11. 12. 자금사용계획서 승인

(미불금을 중점적으로 지불하는것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결의)

4. 다음 6 항목의 현안 문제해결을 담당이사별로 위임키로 결의

- ①공사감리 개정문제—안영배
- ②도시 심의의 전국적 실시 대책수립—오웅석
- ③학교건축 등록 및 허가에 관한문제—김지태
- ④건축사법 개정(안)추진건—송관식
- ⑤2 중적, 면허대여, 관청용역의 협회등록 등
문제—김지태
- ⑥세율인하—구유회

이첨 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허가 신청지 양측 주변 건물현황 사진 2매
- 나. 규 격 12.5cm×9.5cm
- 다. 시 행 1972. 10. 5.

제 목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건사협서울 1094(72. 9. 18)에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 사항은 아직까지 소홀히하여 심의시 미비사항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허다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도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타이틀 박스에 날인하는 건축사의 인은 반드시 원도에 날인하여 청사진 할것.
- 2. 정화조는 반드시 사용인원수에 해당난은 청사진상에 적선 또는 흑선으로 표시하고 날인하며 최소 정화조의 폭과 높이는 표기하여 줄것.
- 3. 도면에 일련번호는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예가 많으므로 필히 도면원도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청사진할것.
(타이틀박스에)
예를들면 설계도서 전체 10매이면
10-1, 10-2, …… 10-10, 2-10, 10-10중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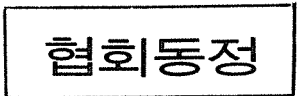
제 목 주거구역 지정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거구역을 지정 공고하였기 통지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37호
- 공고일 : 1972. 10. 25.
- 주거구역 지정조서 : 성동구 거여동지내 32, 930, 70평방미터
- 1. 위 지정된 주거구역안에서 공지비율은 10분의6 이내임.
- 2. 주거구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지구에 저촉될때에는 동법 제한 규정에 따른다.

참고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성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지부에서도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市支部

제 목 미관지구 심의자료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 444, 1-1314(72. 10. 7)로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에 대하여는 건물주변 현황 사진을 첨부토록 통지 되었기

제 목 무등록업무의 방지 및 도서등록 이행에 관한 조치요청

1.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의 임, 직원 또는 대학교수(전임강사 포함)는 건축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 또는 건축직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국영기업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위촉받아 설계를 하고 이를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본협회의 회원의 명의를 대여받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사 업무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건축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친분, 선후배 또는 사제 지간 등의 인적사항으로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발생되며 특히 국가에서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 허가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으로서 본협회 회원의 명의로 된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등록을 받아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발주 관서의 실무 담당자가 건축사법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되지 않은 도서가 납품되어 행사되므로 명의 대여 여부를 가려내기 조차 어려울뿐 아니라 본협회에서는 등록에 수반되는 통계업무마저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오니

3. 건축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부당 행사금지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등록 규정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등록업무의 금지 규정을 관계부처에서 숙지 하므로써 건축사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사가 사전 방지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濟州道支部

同支部에서는 지난 11月10日. 18:30同支部 事務室에서 濟州市 建設課長강남평 同 都市係長강대원氏와 同支部 支部長 및 會員 10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建築業務에 關한 座談會를 開催했다.

同座談會에서 協議된 內容은

問: 제주시 녹지지역 건축 허가 통제에 대하여

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 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허가 할 방침이다.

問: 同一 垵地內에 계속 建築許可를 得할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기타 구비서류의 생략은?

答: 본인의 垵地內에 한해 본인이 건축시(부속 건물)는 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를 생략(단, 기 위 허가된 본 건물이 준공검사를 필치 않을시에 한 하여)

제 목 : 건축업무 수행 참고 사항

설계도서 심의에 대하여 72.10.16 부터 도서등록 사무취급 규정 제5조에 의거 건축사의 대외적 품위 향상 과 권위를 지양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도서등록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을 하고 있으나 각회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녹지지역 및 공원지구 억제 건물.
- (2) 고도지구, 상가지구, 건축선지정
- (3) 대지 소유권 및 등기부 등본.
- (4) 매지면적 구적(도시계획선 저축 부분) 견제율.
- (5) 배치도(소정거리, 건축선, 변소, 대문 (출구)화단, 정화조 위치)

$$S = 1 / 100$$
- (6) 건축면적, 연면적, 신청 이외의 면적.
- (7) 시방서, 구조계산서
- (8) 국기계양대, 우편함, 전기전화선.
- (9) 조적조(벽길이, 두께, 개구부, 건물 규모)
- (10) 소방관계시설.
- (11) 평면도 와 단면도 차이(계단 및 정화조 관계)
- (12) 건축 제도상의 차이점.